

부산광역시체육회
부산스포츠클럽 운영 규정

부산광역시체육회 부산스포츠클럽 운영 규정

제정 2021.06.23

제 1 장 총 칙

제1조(명칭) 본 사업은 부산스포츠클럽(이하 “스포츠클럽”이라 한다)이라 칭한다.

제2조(목적) 스포츠클럽은 청소년과 시민에게 체육활동의 기회를 제공하고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해 지역의 건강하고 건전한 체육문화를 조성하는 한편 전문체육과 생활체육을 연계하여 우수선수 발굴·육성 등 부산 체육이 고루 발전할 수 있는 토대 마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업) 스포츠클럽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 각 호와 같은 사업을 할 수 있다.

1. 지역사회 체육문화 보급 및 건강증진 등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 운영
2. 체육활동을 통한 건전한 청소년육성 및 우수선수 양성과 관련된 사업
3. 우수선수 발굴 및 클럽 활성화를 위한 스포츠경기대회 개최
4. 타 기관 및 단체가 주최하는 경기대회 참가에 관련된 사업
5. 스포츠클럽 활성화를 위한 타지역간의 교류대회 개최 및 참가
6. 체육활동으로 사회 환원과 관련된 사업운영
7. 스포츠클럽 운영활성화를 위한 간담회 개최
8. 기타 스포츠클럽의 목적달성을 위한 필요 사업

제4조(수익사업) 스포츠클럽은 제3조에 규정한 사업의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사업의 본질을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 2 장 스포츠클럽 운영

제5조(운영조직) 스포츠클럽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운영조직을 둔다.

1. 스포츠클럽은 부산광역시체육회(이하 “체육회”라 한다) 스포츠클럽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에서 관할한다.
2. 단장(체육회 사무처장)
3. 관리담당 직원 1명을 둔다.

제6조(운영종목) ① 운영종목은 기초종목 육성을 위해 육상, 수영, 체조는 매년 유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기타 필요종목은 체육회와 해당종목의 회원종목단체와 협의에 의해 운영할 수 있다.

② 전문선수 발굴·육성을 위해 육상, 수영, 체조 종목에 한하여 영재교실을 운영할 수 있으며, 회원의 선발방법은 별도로 정하여 시행한다.

제7조(교육방법) ① 청소년회원은 정규 학교 수업 참석을 의무화하고, 방과 후 또는 주말을 이용하여 교육한다.

② 회원들의 흥미를 유발시키고 건강을 증진 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적용한다.

제8조(프로그램 운영 및 대회참가) 프로그램 운영 및 대회참가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종목별 교육대상자의 참여율 및 학습권을 최대한 보장하는 시간을 고려하여 편성한다.
2. 청소년회원들이 대회에 참가를 위해 정규수업 시간을 할애하여야 할 경우 해당 소속 학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3. 프로그램별 리그대회, 지방자치단체 간의 교류대회, 특별프로그램 등을 통하여 회원간의 친목도모 및 우수선수 발굴을 다양화하기 위해 노력한다.
4. 우수선수 발굴 및 청소년회원의 능력을 파악하기 위한 종목별 대회에 가능한 참가를 많이 한다.

제9조(교육장소) ① 가능한 부산지역 내 공공스포츠 시설을 이용하여 시설물에 대한 활용도를 최대화하고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최소비용 또는 무상으로 사용

할 수 있도록 한다. 단, 필요한 경우 최소한의 범위로 민간체육시설을 이용 할 수 있다.

② 가급적 대중교통으로 이동이 가능한 시설을 이용하여 회원들의 접근이 용이한 시설을 우선 선정한다.

제10조(회비) ① 회비금액은 종목별로 매년 수립되는 사업계획에 의거 결정되며 이용하려는 자는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운영상황에 따라 회비 징수가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회원종목단체와 협의 하여 무료로 운영 할 수 있다.

제11조(회비감면) 회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50%를 감면 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단, 재등록시 2개월 단위로 확인서 제출)
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받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4.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5.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참전유공자
6.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고엽제후유증환자·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
7. 「부산광역시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지원 조례」의 적용을 받는 다자녀가정에 속하는 자(다자녀카드 및 신분증 또는 주민등록등본 제출)
8.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 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

제12조(회비의 환불) 회원이 회비환불을 요구할 경우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의 제18조 교습비등의 반환 등에 의거 다음과 같이 회비를 환불한다.

1. 1개월 이내 : 총 교습시간의 1/3경과 전, 총 교습시간의 1/2경과 전,
총 교습시간의 1/2경과 후로 구분하여 반환한다.
 - 총 교습시간의 1/3경과 전 ☞ 납부한 교습비의 2/3에 해당하는 금액 반환
 - 총 교습시간의 1/2경과 전 ☞ 납부한 교습비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반환
 - 총 교습시간의 1/2경과 후 ☞ 반환하지 않음
2. 1개월 초과 : 반환사유 발생 월의 교습비 반환액(1개월 이내 수강료 반환기준 적용) + 나머지 월 교습비

제13조(보험가입) ① 회원들의 체육활동 중 발생하는 운동손상에 대처하고 안전한 체육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특별프로그램 및 대회참가 시 타지역으로 이동해야 할 경우 이동간의 회원안전을 위해 여행자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③ 보험적용 기간은 회원이 스포츠클럽에 가입한 시점부터 탈퇴 할 때까지로 하며, 기타 보험과 관련된 세부 운영은 해당보험사와 협의하여 운영한다.

제14조(운영규정 변경) 운영규정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위원회에서 재적 운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부산광역시체육회 이사회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제15조(관리) ① 회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회원관리대장을 비치하여야 하며, 재산의 훼손 또는 망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산관리 대장을 비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회원의 개인정보 보호에 주의하여야 하며, 개인정보가 외부로 유출되어서는 아니 된다.

③ 경기기록, 지도일지 등 주요사항은 기록으로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제16조(해산) ① 스포츠클럽이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해산하고, 해산에 관하여 부산광역시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해산 시 잔여재산(국가보조금, 부산광역시보조금 제외)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스포츠클럽과 유사한 단체에 기증 또는 체육회에서 관리 할 수 있다.

제 3 장 재정 및 회계

제17조(사업비) 사업비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국가보조금 : 중앙부처에서 운영하는 공모사업비, 목적사업비 등
2. 부산광역시보조금 : 스포츠클럽 사업운영을 위한 시비보조금
3. 회비수익금 : 체육프로그램 수강을 위한 회원 회비수익금
4. 기타수익금 : 대회개최에 따른 참가비, 찬조금 등

제18조(회계연도) 스포츠클럽의 회계연도는 정부 및 부산광역시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19조(예산편성) ① 스포츠클럽의 세입·세출 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편성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정한다.

② 경상비의 예산편성 및 지출을 지양하고 프로그램운영, 대회개최·참가 등 사업에 관련된 예산을 우선적으로 편성하여 지출한다.

제20조(회계처리) 스포츠클럽의 모든 회계처리는 각 사업비에 맞는 보조금 관리규정 및 부산광역시체육회 사무처운영규정에 의해 회계처리 된다.

제 4 장 기금 운영

제21조(기금목적) 스포츠클럽의 기금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기금 및 적립금을 조성하여 클럽의 자립도를 높이고,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2조(기금구성) 스포츠클럽 기금은 다음과 같은 재원으로 조성한다.

1. 회원의 회비수익금
2. 스포츠클럽기금 조성을 위한 사업 및 행사 수익금
3. 독지가의 찬조금
4. 기타 접수입금

제23조(기금사업) 스포츠클럽 기금으로 아래와 같은 사업을 시행 할 수 있다.

1. 스포츠클럽 프로그램 활성화에 필요한 제반적인 사업
2. 우수전문선수 육성 및 우수 지도자 지원을 위한 사업
3. 스포츠클럽 자립도를 향상 시킬 수 있는 사업
4. 기타 스포츠클럽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24조(기금 운영 원칙) ① 스포츠클럽 기금은 세입 내 세출의 건전재정 원칙을 적용한다.

- ② 기금은 특별회계로 운영한다.
- ③ 세입 및 세출 절차는 체육회 사무처 운영규정을 적용한다.

제25조(기금 관리운영) ① 기금은 금융기관 예치 및 기타 증식 사업을 통해 관리운영 할 수 있다.

- ② 기금 관리운영은 위원회에서 결정하여 시행 할 수 있다.

제26조(기금 사용범위) 기금사용 시 제2조 목적과 제3조 사업을 준하여 사용계획을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사용 할 수 있다.

제 5 장 회원 및 지도자

제27조(회원의 구분) ① 스포츠클럽 회원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유소년회원 : 6세 이상 8세 미만인 회원
2. 청소년회원 : 8세 이상 20세 미만인 회원
3. 성인회원 : 20세 이상인 회원

- ② 별도의 회원 구분방법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추가 할 수 있다.

제28조(회원모집 및 선발) ① 회원은 부산광역시내 거주하는 유소년, 청소년, 성인 회원으로 하며, 성인회원은 전체회원의 30%를 넘지 않아야 한다.

- ② 모집방법은 인터넷, 언론매체, 홍보물 등을 통하여 공개적인 방법으로 하고, 필요에 의해 교육청과 협의하여 특정학교 학생들로만 모집도 가능하다.
- ③ 회원은 수시로 모집하며 프로그램별 운영에 적합한 인원을 모집한다.
- ④ 프로그램별 필요에 따라 별도의 선발(테스트) 기준 통해 회원을 선발 할

수 있다.

제29조(회원의 자격) ① 스포츠클럽의 회원은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입회신청서를 제출하고 회비를 납부한 자로 한다.(단, 회비 미징구 프로그램일 경우 입회신청서만 제출한 자로 한다.)

② 입회신청 작성 시 반드시 스포츠상해 보험가입을 동의해야 하며, 동의하지 않을 시 가입이 불가하다.

제30조(회원의 권리) 회원은 스포츠클럽 운영에 관하여 위원회에 의견을 제기할 수 있다.

제31조(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진다,

1. 스포츠클럽의 운영규정 및 제 규약의 준수
2. 위원회의 결의사항 이행
3. 회비의 납부
4. 기타 위원회가 전하는 사항

제32조(회원의 탈퇴) 회원은 자의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탈퇴 할 수 있다.

제33조(지도자 선발 및 채용) ① 스포츠클럽의 지도자는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선발한다.

② 지도자를 채용 할 때는 아래와 같은 자격기준을 갖춘 자를 선발한다.

1.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
2. 해당종목 국가체육지도자자격증 소지자
3. 전국대회 및 국제대회 수상 경력과 국가대표 선수 또는 시·도 대표선수·지도자활동 경험자에 대해서는 지도자 선발 시 우대한다.

③ 제1항부터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스포츠클럽 운영을 위해 특별한 경력이 있는 자의 채용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위원회 의결로 특별채용 할 수 있다.

1.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의한 결격 사유가 없는 자 중에서 해당종목 국가체육지도자자격증(국민체육진흥법 제2조 제6호 자격증)

- 전문스포츠지도사, 생활스포츠지도사 자격증 소지자 우대

제33조의 2(정년) 지도자의 정년은 만60세로 정한다.

제33조의 3(채용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지도자로 채용할 수 없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스포츠 4대악(조직사유화, 입시비리, 승부조작, (성)폭력) 및 금품·향응수수 등 부적절한 행위로 사법기관의 판결 또는 본회를 비롯한 체육단체, 타 기관에서 징계를 받은 사람
3. 각종 체육관련 단체(종목단체, 체육회 등)로부터 징계 처분을 받은 사람
4. 다른 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사람

제33조의 4(구비서류) ① 지도자를 채용 시 다음 서류를 구비하여야 한다.

1. 이력서 1부
2. 주민등록등본 1부
3. 경기실적·지도실적증명서 1부
4. 자격증 사본 1부
5. 신체검사서 1부
6. 범죄사실확인서 1부
7. 징계유무확인서 1부

제33조의 5(계약기간)

- ① 지도자의 계약기간은 1년으로 한다.
- ② 계약기간은 지도실적 및 지도평가에 따라 연장할 수 있되 매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③ 지도실적 및 지도평가는 연말에 별도 성과평가에 의해 결정된다.

제33조의 6(면직 및 해임) 지도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계약기간 중이라도 면직 또는 해임 할 수 있다.

1. 신체 또는 정신상의 이상으로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 만한 지장이 있는 때
2.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은 경우
3. 채용 결격사유가 채용 후에 발견된 때
4. 지도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자격증의 효력이 없어지거나 취소되어 담당지도

를 수행할 수 없게 되었을 때

5. 스포츠 4대악(조직사유화, 입시비리, 승부조작, (성)폭력) 및 금품·향응수수 등 부적절한 행위로 사법기관의 판결 또는 징계 받은 경우
6. 각종 체육관련 단체(종목단체, 체육회 등)로부터 자격정지 이상의 처분을 받은 경우
7. 본인이 사직원을 제출하거나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항으로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34조(지도자 구분 및 보수 지급기준) 지도자의 근무형태에 따라 보수 및 지급시기를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지도자는 상근지도자, 비상근지도자로 구분한다.
2. 지도자의 급여 및 수당 지급기준은 [별표 1]과 같다.
3. 지도준비수당은 수업시간 외 프로그램 준비 및 회원관리 시간에 대한 수당이며, 1시간 35,000원으로 최대 주1회 2시간을 예산범위 내에서 지급 할 수 있다.(단, 당월결과물이 있는 경우에만 지급 할 수 있다.)
4. 교육훈련장이 2개소 이상인 경우 1개 지역 당 월 100,000원을 추가 지급 할 수 있다.
5. 보수지급일은 지도자가 근무한 익월 5일로 한다.

제35조(지도자 임무) 스포츠클럽 지도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상근지도자
 - 비상근지도자의 임무와 동일한 임무
 - 타 프로그램 현장점검
 - 스포츠클럽 연간계획 및 특별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
 - 기타 스포츠클럽을 활성화하기 위한 제반 업무
2. 비상근지도자
 - 회원의 훈련지도 및 관리
 - 종목별 프로그램 훈련계획서(연간, 월간)
 - 교육일지 작성

- 회원 출석부 작성
- 스포츠클럽 특별프로그램 참가
- 각종 대회 참가 및 결과보고서 작성
- 기타 복무에 관한 사항은 부산광역시체육회 복무규정을 준용한다.

3. 보조지도자

- 회원의 훈련지도 및 안전관리
- 그 외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보조

부 칙(2021.06.23.)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지도자 보수 기준표 (제34조 관련)

(단위 : 원)

구분	기본급	수당		자격증
상근지도자	2,000,000	정액급식비	140,000	국가체육지도자자격증 (전문스포츠지도사, 생활스포츠지도사 우대)
		관내출장여비	160,000	
		명절수당	기본급60% 연간 2회 (설, 추석)	
비상근지도자	-	1시간	35,000	
		1일	70,000	
(비고)				
1. 상근지도자 재임용시 공무원 임금 상승률에 준하여 기본급을 조정한다.				
2. 상근지도자의 기본급이 최저임금보다 적을 시는 최저임금에 따른다.				
3. 비상근지도자 수당은 최대 1일 2시간을 지급한다.				